

(제6-8호)

소송 등의 제기 · 신청

1. 사건의 명칭	주식대금청구의 소
2. 원고 · 신청인	위○○○○○○○○, 이○○, 강○○, 권○○
3. 청구내용	주식대금청구
4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5. 향후대책	법무법인 선임 후 적극대응
6. 제기 · 신청일자	2024.03.13.
7. 확인일자	2024.04.02.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해당사항없음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이 제기 · 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한다.
-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 · 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
- 주2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제기 · 신청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3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

2024년 04월 05일

하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준 기 (인)

